

『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이갑선의원의외 10인

2. 제안이유

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모·부자세대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함

3. 주요내용

- “저소득계층”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,000원 미만인 세대(안 제2조)
-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,000원 미만세대로서 만 65세이상 노인세대, 등록 장애인세대, 모·부자세대(안 제3조)
-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 명단 중에서 대상자 선정 (안 제4조)
-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까지 시장에게 통보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
- 노인복지법 제4조
-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
- 장애인복지법 제9조
- 모·부자복지법 제2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노령,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- 주요 제정내용은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으로서 보험료 부과액이 월 10,000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범위로 하고 지원대상은 구미시 지역 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등록 장애인 세대, 모·부자 세대로 하였음
 - 대상자 선정은 시장이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 명단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보험료는 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토록 하였음
 -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임